

## 구매 추가 조건

기계, 장비, 조립 서비스 대상

세플러코리아 유한회사(세플러코리아(유))



1. 공급자는 당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및 문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당사와의 협의 후 수정을 가하며, 또한 누락 정보 및 문서를 즉시 요구한다. 공급자가 당사에 대하여 적시에 요구하고, 최소한 1 회 서면 독촉을 실시한 경우라면 당사가 제공한 기본 정보 및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도면을 포함한 모든 문서 제작은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공급자를 상대로 제기된 결함에 대한 배상청구 및 기타 배상청구에서는 이러한 승인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3. 공급될 모든 문서는 공급된 물품의 실제 설계도와 일치해야 하며 당사 표준과 같은 모든 관련 조항 및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문서는 한글로 작성되며 상호 동의한 부수만큼 데이터 이동매체를 통해 제공된다. 기타 언어로 된 문서 버전은 별도로 합의되어야 한다.

별도의 약정이 없을지라도, 공급된 물품의 취급법 일반을 다루는 설치 및 운영 설명서가 당사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된 물품의 수리,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모든 문서 자료도 제공한다.

4. 공급 물품의 구성품 및 부속품은 신속하고 용이하게 서비스, 진단, 수리, 교체될 수 있도록 최첨단 방식으로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 마모 부품은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
5. 공급자는 주별 생산 진행 상황을 기재한 생산 계획을 계약 체결 직후 제시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공급자는 당사에 매 4 주 간격으로 생산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6. 당사는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 정규 업무시간 동안 공급자 및 하청 공급업자인 제조업체의 공급 물품 생산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조사할 권한을 지닌다. 공급자는 상기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당사에 제공한다.
7. 만일 대금 선불이 요구되는 경우, 공급자는 당사가 수락한 신용기관이 발급한 무한 보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취소가능성 청원서, 상계 능력 청원서, 지속적 구제 청원서를 철회함으로써 신용기관이 해당 선불 금액을 당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증이다.
8. 만일 계약상에 조립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비계, 용구, 리프팅 기기, 도구 등 조립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제공한다. 만일 당사의 협조 제공에 대하여 상호 동의한 경우라면 공급자가 이러한 협조에 대한 비용 및 관련 리스크를 부담한다.

공급자는 적시에 조립 작업 일정을 당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작업 개시 전, 공급자는 기초작업, 공급지점 및 조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기타 조건을 확인한다.

공급자는 당사 공장에서의 조립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 현황을 당사에 서면 통보한다. 당사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급자 측의 직원 또는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신뢰할 만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청 공급업자가 공급자의 임무에 참여할 경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직원 및 대리인이 당사의 지시사항을 따르고 당사 공장의 일반적 통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 구매 추가 조건

기계, 장비, 조립 서비스 대상

세플러코리아 유한회사(세플러코리아(유))



당사 공장 구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다른 작업 활동을 불가피한 정도 이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당사는 구내에 반입되거나 구내로부터 반출되는 모든 물품을 확인할 권리를 지닌다. 물품 반입 및 반출시 공급자는 당사에 해당 물품의 상세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제공한다. 공급자 소유의 물품인 경우 물품상에 소유를 알리는 기업명 또는 등록상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당사는 당사 작업에 사용되는 공급자 소유 재산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

물, 압축수 및 전류는 지정된 공급지점으로 당사가 공급한다. 만일 추가 공급라인, 도관 및 공급지점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 및 리스크 부담 하에 이를 설치 및 유지하며, 조립 작업 완료시 이를 철거해야 한다.

공급자는 당사에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다르게 약정되지 않은 이상 공급자는 해당 작업 도중 또는 완료 후 화재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상호 동의한 가격은 확정 가격이다. 공급자는 추가 서비스 수행 이전 당사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10. 당사는 인도 전 공급자가 구내에서 실행하는 기능 테스트를 포함한 사전 수락을 결정할 권리를 지니며, 해당 기능 테스트는 DIN ISO 230-1(기계 공구의 기하학적 정확도), VDI/DGQ 3441(작업 및 포지셔닝 정확성을 위한 통계 테스트) 및 DIN 45635 (소음 정도 테스트) 기준을 따른다. 사전 수락일자는 공급자가 최소 4 주 전에 당사에 적시 제안하며 당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사전 수락 후 최대 1 주일 내에 모든 필요 문서가 당사에 제공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사전 수락에 필요한 모든 공구, 기기 및 자재를 비용 청구 없이 당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생산량 조사는 항상 건별로 별도의 상호 동의 하에 실시한다.

11. 공급 물품에 대한 기능 테스트 또는, 별도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사 공장에서의 시험 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기능 테스트 및 시험 운영을 위하여 공급자는 당사 직원에게 적합한 지시 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연속해서 진행되는 4 주간의 시험 운영도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한다. 테스트 및 시험 운영을 통해 공급된 물품이 계약상 동의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능 테스트 및 시험 운영 도중 당사는 생산용 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 기능 테스트 및 시험 운영 완료 이후 생산용 기계는 제거된다. 당사는 수락을 결정한 경우 수락서를 작성하며 이에 공급자 및 당사가 서명을 한다.

12. 사전 수락, 기능 테스트, 시험 운영 및 수락 실시에 대한 비용 및 리스크는 공급자가 부담하며, 공급자는 적합한 테스트, 측정 수단 및 충분한 감독 직원을 제공한다. 기능 테스트 및 시험 운영을 위한 운영 직원 및 자재는 당사가 제공한다.

만일 사전 수락, 기능 테스트, 시험 운영 또는 수락이 중단되어야 하거나 공급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연장 또는 반복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모든 비용 및 당사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수락 이후 당사는 제공된 모든 공급 물품 및 문서를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

## 구매 추가 조건

기계, 장비, 조립 서비스 대상

세플러코리아 유한회사(세플러코리아(유))



14. 만일 공급 물품의 작동을 위해 공식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승인을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한다.
15. 다르게 약정되지 않은 이상 품질 및 권리상 결함에 대한 배상청구 제한 기간은 관련 법률이 이에 대해 보다 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수락일자로부터 36 개월 동안이다. 만일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수락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배상청구 제한 기간은 공급된 물품 제공 시점으로부터 개시된다.  
  
예비 부품을 위한 제한 기간은 해당 부품을 작동한 일자로부터 24 개월 동안으로 계산되며, 당사가 해당 예비 부품을 수리한 일자 이후 3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6. 공급자는 수락 후 10 년 동안 예비 부품 인도 및 수리 작업 실시를 할 의무가 있다. 예비 부품 인도 및 수리 작업시 원 인도에 적용된 조건을 준수한다.
17. 기타 모든 상황에는 당사의 일반 구매 조건이 적용된다.

세플러코리아 유한회사(세플러코리아(유))  
Schaeffler Korea Yuhan Hoesa